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069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06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8. 29 선고 2000나4554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A 담당변호사 문BA)

【피고, 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8. 29. 선고 2000나45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125,678,884원에 대한 1997. 12.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미화 금 113,034.58달러에 대한 1997. 12.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7.76180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김E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로 시가 금 239,998,000원의 사출금형기(Injection Moulding Machine HD220SA II) 2대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이 사건 제2, 3, 4대출을 각 실행하면서, 위 각 신용보증의 특약사항에 따라 위 각 대출시마다 김EA이 그 각 대출금으로 구입한 기계들을 포함하여 김EA이 운영하는 송탄시 소재 공장 소재 기계들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김EA이 1997. 9. 19. 중소기업은행 DA지점으로부터 황색규제를 받게 되자, 1997. 10. 2.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발생 통지를 한 사실, 그런데, 김EA이 위 보증사고 이후 1997. 12. 12. 사이에 위 공장 내의 모든 기계류를 처분하여 행방을 감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원고로서는 김EA이 위 각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빠지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황색규제를 받은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물에 관하여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 담보물들을 모두 분실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위 분실된 담보물건 가액 상당의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담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담보물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485조, 채권자의 공장저당 목적물에 대한 담보보전의무 및 동 담보의 상실로 인한 보증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3대출은 1996. 1. 25.에, 이 사건 제4대출은 1996. 8. 9.에 각 실행되었는바, 이는 분할대출로서 분할대출에 관하여는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5항에 따라 「①최초의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실행이 예정되어 있고, ② 최초의 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되었으며, ③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대출의 기한과 같을 때」에 한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된 대출도 최초의 대출과 합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각 대출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3, 4대출의 최초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3대출은 원고가 그에 관한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1995. 9. 28.에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최초의 대출인 이 사건 제3대출은 피고의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되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제3, 4대출의 대출기한이 2003. 9. 14.과 2003. 8. 10.로서 상이하나, 이는 외화대출의 특성상 원고가 임의로 대출기한을 정할 수 없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대출기한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제3대출은 특별외화대출로서 KK은행의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그 대출기한이 정해졌고, 이 사건 제4대출은 일반외화대출로서 원고 본점의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그 대출기한이 정해짐으로써 위와 같이 대출기한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경위나 기한의 차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출채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제3, 4대출이 피고 주장의 위 약관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와 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5항에 관한 해석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 또는 연 7,761800%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0. 3. 1.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125,678,884원에 대한 1997. 12.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미화 금 113,034.58달러에 대한 1997. 12.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76180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